

의안번호	제 445 호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

발의자	최경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5월 29일

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
(최경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4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5월 29일
발 의 자 : 최경천, 박상돈, 박형용,
심기보, 육미선, 이상욱,
이상정

1. 제안이유

-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.
(안 제5조)
- 나.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. (안 제6조)
- 다.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,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7조)
- 라.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. 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-49호
- 다. 협의 : 여성가족정책관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,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,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노동 인권”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,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.
3. “사용자”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도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자의 책무)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, 신체적·정신적·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사용자는 「근로기준법」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
2.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
3. 제7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
4.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
5. 계획 추진에 따른 자원조달 방안
6.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)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
2.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
3.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
4.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
5.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
6.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)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.

②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,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기업진흥원,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·노동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9조(청소년노동인권센터)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센터에 변호사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포상)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대한민국헌법

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
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
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

□ 근로기준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근로자“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
2. “사용자“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 ① 15세 미만인 자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(就職認許證)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(職種)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□ 근로기준법 시행령

제35조(취직인허증의 발급 등)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. 다만,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(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)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(連名)으로 하여야 한다.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“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교육 및 홍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「근로기준법」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,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, 친화 사업장 선정·홍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)
- 안 제7조(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)
- 안 제9조(청소년노동인권센터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,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 상승률 고려하여 산출

나. 추계 결과 :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323,8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
청소년 노동인권사업	323,800	47,800	56,000	66,000	77,000	77,000

※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: 별첨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	47,800	56,000	66,000	77,000	77,000	323,800
도비	47,800	56,000	66,000	77,000	77,000	323,800
세 출	47,800	56,000	66,000	77,000	77,000	323,800
인권상담 종사자 인건비(1명), 노무사연계 포함	38,400	39,000	39,000	40,000	40,000	196,400
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양성	3,030	5,000	5,000	5,000	5,000	23,030
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	1,970	2,000	2,000	2,000	2,000	9,970
친화사업장 발굴 및 홍보	4,400	5,000	5,000	10,000	10,000	34,400
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	-	5,000	10,000	10,000	10,000	35,000
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 해 필요한 사업	-	-	-	10,000	10,000	20,000
청소년인권실태조사	-	-	5,000	-	-	5,000
재원 조달	47,800	56,000	66,000	77,000	77,000	323,8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47,800	56,000	66,000	77,000	77,000
	세외수입					